

#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1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출자 기획담당관

##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1999. 3. 31.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제2조제1항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 붙임
- 다.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2022. 5. 3. ~ 5. 22. (20일간)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평가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 평가 : 해당 없음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나) 경기도 : 공공기관담당관

#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기획담당관 황규만
	팀장 직위·성명	경영분석팀장 박유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배명선(☎2042)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조(사업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1998.04.01 조례 제 136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